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의무소방원에 대한 영창 징계 폐지〉

■ 김기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739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기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2. 19.
3. 회 부 일 : 2024. 12.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법」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소방원의 징계의 종류를 영창, 근신, 견책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0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영창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7헌바157, 2018헌가10)과 「병역법」 개정예에 따라 현역병에 대한 영창제도는 폐지되었으나, 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 중 영창제도는 그대로 존치되어 있어 법률 간 체계적합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서 영창을 삭제하고, 강등, 복무기강교육, 감봉, 휴가 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그 종류를 규정하여 의무소방원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

Ⅲ. 검토의견

1. 의무소방원에 대한 영창 징계 폐지

개정안은 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서 영창을 삭제하고, 강등·복무기강교육·감봉·휴가단축·근신 및 견책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징계) ①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는 영창(營倉)·근신(謹慎) 및 견책(譴責)으로 한다.	제5조(징계) ①----- 강등, 복무기강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謹慎)----구분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1.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
<신설>	2. 복무기강교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의무소방대의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하여 교육·훈련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신설>	3. 감봉은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신설>	4. 휴가단축은 복무기간 중 정하여진 휴가일수를 줄이는 것을 말하며, 단축일수는 1회에 5일 이내로 하

<신 설>

<신 설>

②영창은 의무소방대 또는 그 밖의
구급장에 구급함을 말하며 그 기간
은 15일 이내로 한다.

③근신은 훈련 또는 교육을 받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평상근무에 복무합
을 금지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
(非行)을 반성함을 말하며 그 기간
은 15일 이내로 한다.

④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
하고 회개(悔改)하게 함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고 복무기간 중 총 15일을 초과하
지 못한다.

5. 근신은 훈련이나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 근무에 복무하는
것을 금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
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6. 견책은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
여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아
니하도록 하는 훈계를 말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⑤ 의무소방원은 이 법 또는 이 법
에 따른 명령이나 다른 법률에 따르
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구금을 당하
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사유에 대
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의무소방원이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전환복무¹⁾’의 한 형태임. 동 제도는 인구 감소로 인한 병역

1)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① 의무소방원은 「병역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개정 2006.3.24.>

② 「병역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대상자가 될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는 18세 이상인 자(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된 자를 제외한다)중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4.3.11., 2006.3.24., 2014.11.19., 2017.7.26.>

「병역법」

제25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이들을 입영하게 하여 정하여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1. 소방청장으로부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를 추천받은 경우

2.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경찰 임용예정자와 경찰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의무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여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복무를 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의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과 협의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3. 전환복무 자원의 충원이 곤란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환복무기간과 연장된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으

자원의 감소로 2021년 7월 이후 모집을 중단하였고, 2023년 6월에 의무소방원이 모두 전역함에 따라 함에 사실상 폐지된 제도임.

<의무소방대 제도 개요>

(설치연혁) 2002년 서울 홍제동 화재로 6명의 소방공무원이 순직하고 3명이 부상당하는 사고를 계기로 소방 현장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8월 설치근거 법률인 ‘의무소방대 설치법’ 제정

(복무연혁) 2002년 3월 1기 209명을 시작으로 2023.6월까지 총 73기, 약10,607명이 의무소방원으로 근무. ※ 복무기간 20~ 23개월 근무

(근무부서) 시·도소방본부(소방서, 119안전센터, 구조대 및 구급대)

(주요업무) 화재진압 및 구조, 구급활동 보조, 재난현장 촬영 및 생활안전 보조, 예방순찰, 소방용수시설 점검 등 소방업무 보조

(폐지사유) 병역 자원 감소 및 국방개혁 2.0에 따라 2018년부터 순차적 배치인원을 축소하여 2023.6월 73기 만기 전역을 마지막으로 폐지

(자료: 소방청)

로 본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경우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한다. <개정 2016.5.29.>

⑥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017.7.26.>

⑦ 국방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전환복무 해제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되는 사람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⑧ 제1항에 따른 추천인원 배정과 전환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한편, 군 영창제도는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의해 1962년 1월 20일 「군 인사법」에서 법제화되었는데²⁾, 이후 영창제도는 성격상 신체구금임에도 불구하고 민간과는 달리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지 않음으로써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음.

이에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방위원회의 심의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2020년 2월 4일에 법률 제16928호로 공포되었음(시행일 2020.8.3.).

또한, 2020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병에 대한 영창처분이 여러 가지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고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면서 군 영창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음³⁾.

2) 최초의 군 징계제도는 1896년 1월 24일 칙령 제11호로 반포된 「육군징벌령」임(신양균, 「군 징계 영창제도의 현황과 인권적 검토」, [국가인권위원회, 「군 징계 영창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자료집, 2013.9.27., p.10.; 형혁규, 2020년 폐지된 군 영창제도, 전환복무에는 존치:군 영창제도 폐지 이후에도 영창 징계 처분,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2296호, 2면, 2024. 12. 5., 재인용]

3) 헌법재판소는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등’ 사건에서 “병(兵)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일정기간 부대나 함정(艦艇)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에 감금하는 영창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구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중 ‘영창’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면서, 그 이유로

“영창처분은 징계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상 불이익 외에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까지 그 내용으로 삼고 있어 징계의 한계를 초과한 점,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영창처분은 그 실질이 구류형의 집행과 유사하게 운영되므로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형사상 절차에 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영창처분이 가능한 징계사유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기준이 불명확하여 영창처분의 보충성이 담보되고 있지 아니한 점, 심판대상조항은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거치지만, 모두 징계권자의 부대 또는 기관에 설치되거나 소속된 것으로 형사절차에 견줄만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라고 보기 어려운 점,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인신구금과 같이 징계를 중하게 하는 것으로 달성되는 데 한계가 있고, 병의 비위행위를 개선하고 행동을 교정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과 훈

그러나, 군인사법에 따른 영창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서는 의무소방원에 대한 영창제도가 아직 존재하고 있음.

개정안은 의무소방원에 대한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강등, 복무기강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 현행과 개정안의 비교>

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 (제5조제1항)		「군인사법」에 따른 병(兵)에 대한 징계의 종류(제57조제2항4)	
현행	개정안	법률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16928호 (2020. 2. 4. 공포, 2020. 8. 3. 시행)
영창	-	영창	-
	강등	강등	강등
	복무기강교육		군기교육
	감봉		감봉
	휴가단축	휴가제한	휴가단축
근신	근신	근신	근신
견책	견책		견책

련을 제공하는 것 등으로 가능한 점, 이와 같은 점은 일본, 독일, 미국 등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다도 그러한 점 등에 비추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 군대 내 지휘명령체계를 확립하고 전투력을 제고한다는 공익은 매우 중요한 공익이나, 심판대상조항으로 과도하게 제한되는 병의 신체의 자유가 위 공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였음([2020. 9. 24. 2017헌바157, 2018헌가10(병합)]).

4) 「군인사법」

제57조(징계의 종류) ②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으

비록 현재는 의무소방원 제도가 폐지된 상태이나 향후 병역자원환경
이나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의무소방원 제도가 부활할 가능성을 배
제할 수 없다는 점⁵⁾, 「군인사법」에 따른 영창제도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았다는 점, 의무소방원은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현
역병이므로 군인의 인사에 관한 기본법인 「군인사법」 상의 병에 대
한 징계의 종류와 의무소방원의 징계의 종류를 다르게 할 합리적인 사
유가 적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서 영창을 삭제하고, 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군인사법」에 따른 병의 징계의 종류와 동일하
게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임.

로 구분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4.>

1.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
 2. 군기교육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하여 교육·훈
련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3. 감봉은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4. 휴가단축은 복무기간 중 정해진 휴가일수를 줄이는 것을 말하며, 단축일수는 1회에 5일
이내로 하고 복무기간 중 총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5. 근신은 훈련이나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 근무에 복무하는 것을 금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6. 견책은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여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훈계를
말한다.
- ③ 병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구금을 당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2.4.>
- ④ 제2항에 따른 징계의 사유에 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5) 실제로 한덕수 총리는 2023년 8월 23일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를 통해 “의경
제도의 제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의경 부활’ 하루 만에 물러선 총리실」,
□경향신문□ 2023. 8. 24.; 형혁규, 2020년 폐지된 군 영창제도, 전환복무에는 존치:군 영창제도
폐지 이후에도 영창 징계 처분,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2296호, 1면, 2024. 12. 5., 재인
용)

다만, 소방청은 2023년 6월 이후에는 복무 중인 의무소방원이 없고, 향후에도 의무소방원 제도를 부활할 계획이 없으므로 기존 의무소방원의 건강보험 처리 등 행정적 처리가 완료되는 대로⁶⁾ 이 법의 폐지 및 이 법에 따라 의무소방원으로 재직하던 중에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 등을 유지하기 위한 법률안의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입장⁷⁾이므로

의무소방원 제도와 관련한 정부의 향후 추진 계획을 감안해서 개정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6) 소방청은 2025년 상반기 중 관계기관인 건강보험관리공단과 협의하여 행정처리를 완료할 예정이라 설명함.

7) 소방청은 의무소방원 제도가 실질적으로 존속했던 2002년부터 2023년 사이에 의무소방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순직 2명, 공상자 54명*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보상 근거**를 유지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면서 이 법의 폐지를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이라 밝힘.

* 2016년 기준, 2017년 이후 자료는 시·도 소방본부에 별도 파악 중

** 현행법을 폐지하더라도 현행법 제7조(공사상급여금), 제8조(보상 및 치료) 조문의 효력 유지 필요

참고**의무소방원 징계 처분 현황**

(자료: 소방청)

<의무소방원 징계처분 현황(2002-2023)>

구분	총계	영창	근신	견책	기타
계	39	8	12	15	4

<군인사법에 따른 영창제도 위헌결정 이후 의무소방원 징계처분 현황>

구분	총계	영창	근신	견책	기타
2020	0	0	0	0	0
2021	3	0	2	1	0
2022	1	0	1	0	0
2023	4	1 ⁸⁾	0	3	0
계	8	1	3	4	0

8) (처분사유) 근무지 탈영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내역) 영창 15일